

< 3.28(월) 석간 (인터넷 3.28(월) 06:00이후) >



보 도 자 료

- ▶ 2011. 3. 28. 배 포
- ▶ 총 4쪽(사진 없음)

▶ 제조산재예방과 과 장 정진우
사무관 오만석

TEL : 02-6922-0931
FAX : 02-6922-0972
E-MAIL: oms005@moel.go.kr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고용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된다 - 검사원의 전문성 높이고 1인당 검사물량도 줄여 -

- 앞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는 28일(월)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 변경,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고용부에 따르면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 검사원의 경력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높였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하였다.
 - 또한,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 이번 검사기관의 기준을 바꾼 것은 '09년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실적과 경험을 반영하여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며
 - 2010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17만 여대의 위험기계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약

□ 개정 목적

- '09년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 위탁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장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① 안전검사기관 검사원 자격·경력 요건 강화

- 크레인·압력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비파괴검사 및 용접부위 검사에 대한 검사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 안전검사기관 검사원의 경력기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보다 낮아 형평성 결여
- 이에 따라, 크레인·압력용기 등 기종에 대하여 비파괴·용접검사분야 자격자를 보유하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하고
 - 검사원 경력요건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
 - ※ 기존 검사인력은 경력요건 충족 인정(부칙)

② 안전검사장비 보유기준 합리화

- 안전검사기준에 장비활용 항목은 있으나 장비보유 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는 장비 추가(소음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등)
- 안전검사기관의 본부 또는 지부별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가 2 이상 중복되는 장비는 공동 활용 가능

③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보유기준 변경

- 현재 안전검사기관의 기본인력이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물량의 변동 및 기관별 여건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에 한계
 - 실제 검사물량에 비하여 과다한 인력보유 현상 발생
 - ※ 현재 종합안전검사기관의 인력은 80명으로 기관당 연간 200,000건의 검사가 가능하나, '10년도 검사실적은 모두 177천 여건에 불과

- 따라서, 기관별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인력을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보완
- 검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검사원의 연간 검사한도 축소**
 - 연간 1인당 2,000대 → 1,000대~1,500대

【검사인력 보유기준 변경 내용】

검사대상 기계 등	현행 기준 (명)	개정안 (명)		
		기본 인력	추가인력	
			분야별 안전검사기관	종합 안전검사기관
계	80	64		
크레인·리프트·곤돌라	25	21	연간 21,000대를 초과한 1,000대당 1명 추가	연간 72,300대를 초과한 1,200대당 1명 추가
프레스·전 단기·사출 성형기·롤러가원심기	25	19	연간 22,800대를 초과한 1,200대당 1명 추가	
압력용기·화학설비· 건조설비	25	19	연간 28,500대를 초과한 1,500대당 1명 추가	
국소배기장치	5	5	연간 5,000대를 초과한 1,000대당 1명 추가	연간 5,000대를 초과한 1,000대당 1명 추가

④ 위탁교육기관 등록의 민원 처리기간 명시

- 위탁교육기관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명시